

평택지제역자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평택지제역자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 각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추천대상자”는 당첨자로써 상기와 같이 정상 접수시 동호수를 배정받으며,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타 유형 특별공급 미당첨자 전체 신청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특히, “예비대상자”의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청약예정자분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 참가)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는 가능)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A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7층, 10개동, 총 1,0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총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주택형(약식)	총공급 세대수	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민영 주택	59A	108	11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59B	106	11	
	74A	106	10	
	74B	104	10	
	84A	260	26	
	84B	260	26	
	97A	52	-	
	97B	51	-	
	99P	3	-	
	113P	2	-	
합계		1,052	94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장애인)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 분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59A		59B		74A		74B		84A		84B		합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예비
장애인	1	(3)	1	(3)	1	(3)	1	(3)	2	(6)	2	(6)	8 (24)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유형에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대상자입니다.

■ 분양일정(예정사항으로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예정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1. 06. 30. (수)	평택지제역자이 홈페이지 (http://www.jije-xi.co.kr)
견본주택 개관	2021. 06. 30. (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정부방침에 따라 개관 일정 및 관람의 방법은 미정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청약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동시 발표)	2021. 07. 22. (목)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가능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종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10:00~14:00로써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과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6. 30.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선정하여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평택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 부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06. 30. (수) 예정)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III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유형별 배정세대수 내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추첨에서 배제)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 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시 최초 추천기관에 신청한 주택형으로만 청약신청(주택형 변경 불가)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세대구성원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업무 담당관께서는 청약신청자가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 유형별 세부사항 등을 분양사무소, 팜플렛 및 홈페이지(<http://www.jije-xi.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지제역자이 분양사무소 (**☎1800-5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지제역자이 현장위치도



■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 위치도 및 투시도



▷ 견본주택(예정)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

▷ 대표번호 : 1800-5944

▷ 홈페이지 : <http://www.jije-xi.co.kr>

※ 불임자료는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